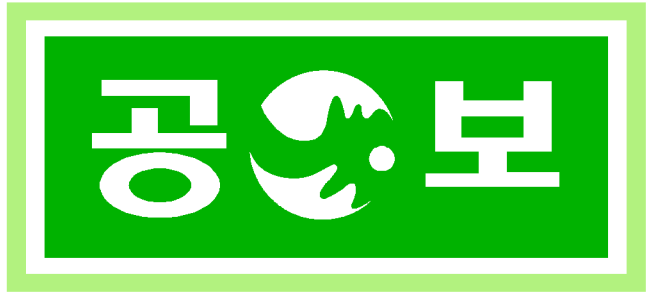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92 호 2014. 6. 9(월)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2호[울산광역시 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2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96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98호[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99호[도로명주소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00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1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유종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현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구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현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명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및 구성) ① 현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 노력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

제6조(현장의 개정) 현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② 규제 신고인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등)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불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직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행정마일리지 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와 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 전화·FAX

접수처	전화번호	FAX
북구청 경제일자리과(규제개혁추진단)	241-7715, 7716	241-7709

○ 우편·방문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규제개혁추진단):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683-707)

○ 홈페이지: 북구청(<http://www.bukgu.ulsan.kr>)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현장의 기본원칙, 내용 및 구성(제4조, 제5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등(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9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4. 6.2.	2014 - 12	울산광역시 남구 놀길로 339길35 103동 1201호	김명곤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45번지 일원 지선	12.0	2014.6.2. ~ 2019.5.31.	활어수족관 운영을 위한 관로매설 (D100mm)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98호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북구 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 제외)

(단위 : 원/㎡)

지 목	평균공시지가	지 목	평균공시지가	지 목	평균공시지가
전	183,232	주 차 장	423,058	수도용지	117,516
답	117,881	주유소용지	626,475	공 원	125,361
과 수 원	180,698	창고용지	452,434	체육용지	285,609
목장용지	120,692	도 로	125,419	유 위 지	134,758
임 야	10,742	철도용지	65,510	종교용지	330,012
광 천 지	-	제 방	59,426	사 적 지	28,000
염 천	-	하 천	42,433	묘 지	129,211
대	609,389	구 거	80,925	잡 종 지	232,906
공장용지	242,275	유 지	71,933		
학교용지	429,354	양 어 장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99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11의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18-20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11(천곡동)	2014-06-09	달천동사면부락명칭을사용하여서도로명부여하였다.	2010-04-27	
2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4B 2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4길 6-4(호계동)	2014-06-09	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3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498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579(가대동)	2014-06-09	예전시명인농서예외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9-04-09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08 6-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7(진장동)	2014-06-09	진장동에소재하는도로로법정등간장동마을을반영하여 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8-02-29	
5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81-2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189-1(대안동)	2014-06-09	예전지명인대안명칭을사용해서도로명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9-3	울산광역시 북구 누부귀19길 52-28(연암동)	2014-06-09	이지명의옛지명이므로원제도로부락마을이존재하여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7	울산광역시 북구 장평동 482-8	울산광역시 북구 차림2길 46(장평동)	2014-06-09	기존차림마을인차림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48 7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18-14(진장동)	2014-06-09	옛지명이며원제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9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66-3	울산광역시 북구 주림2길 4-6(무룡동)	2014-06-09	기존차림마을인주림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78 4-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9길 5(진장동)	2014-06-09	옛지명이며원제도사용하는이름으로울산시민이면누구나 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12-27	
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87-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5길 3(연암동)	2014-06-09	원제도법정동명으로서사용되는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00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 울산광역시 산하중앙2로 27-7외 3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6.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58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87-31(정자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해중앙2로 27-7(정자동)	2014-06-09	중속도로구간 변경	
2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6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87-40(정자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해중앙2로 27-6(정자동)	2014-06-09	중속도로구간 변경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6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87-44(정자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해중앙2로 27-8(정자동)	2014-06-09	중속도로구간 변경	
4	울산광역시 북구 장평동 482-1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46(장평동)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48(장평동)	2014-06-09	중복부여	